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5. 12. 31)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 1. 1.부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기준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III. 검토의견

- 최근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식량자원이 연간 15조원에 이르고 있는 등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종전 환경부령에서 직접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음식폐기물 다량배출자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그 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폐기물 배출사업장을 말하며, 1993년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감량의무사업장 제도 시행 이후 그간 음식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감량 성과보다는 감량의무자와 이를 지도·감독하는 자치구의 행정적 부담이 훨씬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을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실질적·효율적으로 적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2호) 내용을 보면,
 -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제9조의2제2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에 한해 감량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류 전문점 등은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등 일부 완화하였는데,
 - 제도의 도입 목적이 음식폐기물 다량 배출원에 대해 자가처리 책무를 부여하여 음식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량배출이 되지 않는 업소에 까지 불필요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개선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대신 감량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우리 구 관내 감량의무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합 계 (개소)	식 품 접 객 업 소			집 단 급식소	관 광 숙박시설
		소 계	일 반	휴 계		
2007. 1. 1.현재	903	783	723	60	113	7
조 례 개 정 시	874	754	706	48	113	7

IV.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8038호)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 등) ① ~ ② (생략)

③ 생활폐기물배출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부령 제372호)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 6. (생략)

※ 개정 전(부령 제179호)

제9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을 하는 자

○ 식품위생법(법률 제8113호)

第21條 (施設基準) ①다음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運搬業·販賣業 및 保存業
2.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造業
3. 食品接客業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등)

⑤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總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종류별·영업소별로 食品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78호)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 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현행)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